

대학원 장학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7.09.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호서대학교(이하 “ 본교 ” 라 한다) 대학원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일반대학원 교내장학금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일반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장학금
2. 조교장학금
3. 교직원장학금
4. 가족장학금
5. 모교장학금
6. 공무원장학금
7. 외국인장학금
8. 면학장학금
9. 산학장학금 (신설 2019.10.28)

제3조 (성적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과락 없이 6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재학생

② 성적장학금은 90만원 이내로 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이 4인 이상인 학과(전공)의 경우에만 한하여 지급하며 대상인원은 재학생 4인을 기준으로 1명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액과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조교장학금) 본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연구조교 또는 실습조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교장학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 2. 14.]

제5조 (교직원장학금) 본교 교직원(계약직원, 학교법인 호서학원 임직원 및 산학협력단 직원을 포함하되, 본직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직원(재직자에 한한다)의 직계자녀(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일반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교직원장학금을 지급한다.

1. 교직원과 직계자녀에게 수업연한 동안 수업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대학의 직원(본교 노동조합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실제 납입금액(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다)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3.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연구원포함)에게 석사과정 수업연한 동안 수업료의 6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20. 3. 1)

제6조 (가족장학금) 가족(직계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한다) 중 2인 이상이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

인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08.12.)

1. 2인이 재학 중인 경우 : 1인은 수업료의 50퍼센트 지급. 이 경우 다른 1인은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3인이 재학 중인 경우 : 1인은 수업료 전액 지급, 이 경우 다른 2인은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모교장학금) 본교 학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포함하되, 42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석사학위과정 졸업자가 일반대학원 상위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으로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8조 (공무원장학금) 공무원(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일반대학원에 입학(신·편·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수업료의 35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학군협약에 따른 군위탁생의 경우에는 수업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직원에게 수업료의 3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2. 14.]

제9조 (외국인장학금) ① 일반대학원에 신입학 및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토픽 성적 취득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률을 따로 정하도록 한다.(개정 2020.08.12.)

1. <삭제 2020.08.12.>
2. <삭제 2020.08.12.>
3. <삭제 2020.08.12.>
4. <삭제 2020.08.12.>
- ② <삭제 2020.08.12.>

[전문개정 2018. 2. 14.]

제10조 (면학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방법과 지급액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특수대학원 교내장학금

제11조 (장학금의 종류) 특수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장학금
2. 가족장학금
3. 모교장학금
4. 공무원장학금
5. 외국인장학금
6. 교사장학금
7. 직장인장학금
8. 봉사장학금
9. 조교장학금

제12조 (교직원장학금) 본교 교직원 또는 교직원의 직계자녀(배우자를 포함한다)가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제5조의 각 호에 따라 교직원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3조 (가족장학금) 가족(직계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2인 이상이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20.08.12.)

1. 2인이 재학 중인 경우 : 1인은 수업료의 50퍼센트 지급. 이 경우 다른 1인은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3인이 재학 중인 경우 : 1인은 수업료 전액 지급, 이 경우 다른 2인은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모교장학금) 본교 학부 졸업자가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그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15조 (공무원장학금) ① 공무원이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수업료의 35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학군협약에 따른 군위탁생의 경우에는 수업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임직원에게 수업료의 3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2. 14.>

제16조 (외국인장학금) ① 특수대학원에 신입학 및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토픽 성적 취득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률을 따로 정하도록 한다.(개정 2020.08.12.)

1. <삭제 2020.08.12.>
2. <삭제 2020.08.12.>
3. <삭제 2020.08.12.>
4. <삭제 2020.08.12.>

② <삭제 2020.08.12.>

[전문개정 2018. 2. 14.]

제17조 (교사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현직교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수업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4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8조 (직장인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사업자등록 업체에 재직 중인 직장인(본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42학점 이상 이수자를 포함한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업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9조 (봉사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원우회 학생대표(회장 및 총무를 말한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50만원 이내로 한다.

제20조 (조교장학금) 본교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연구조교 또는 실습조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교장학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 2. 14.]

제 4 장 전문대학원 교내장학금

제21조 (장학금의 종류) 전문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장학금
2. 가족장학금
3. 모교장학금
4. 공무원장학금
5. 외국인장학금
6. 면학장학금

7. 연신원장학금

8. 조교장학금

제22조 (교직원장학금) 본교 교직원 또는 교직원의 직계자녀(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제5조의 각 호에 따라 교직원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3조 (가족장학금) 가족(직계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2인 이상이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20.08.12.)

1. 2인이 재학 중인 경우 : 1인은 수업료의 50퍼센트 지급. 이 경우 다른 1인은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3인이 재학 중인 경우 : 1인은 수업료 전액 지급, 이 경우 다른 2인은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모교장학금) 본교 학부 또는 석사학위과정 졸업자가 전문대학원 상위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으로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25조 (공무원장학금) ① 공무원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며 수업료의 35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학군협약에 따른 군위탁생의 경우에는 수업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임직원에게 수업료의 3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2. 14.>

제26조 (외국인장학금) ① 전문대학원에 신입학 및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토픽 성적 취득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률을 따로 정하도록 한다.(개정 2020.08.12.)

1. <삭제 2020.08.12.>

2. <삭제 2020.08.12.>

3. <삭제 2020.08.12.>

4. <삭제 2020.08.12.>

② <삭제 2020.08.12.>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합신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장학금으로 도서 구입비와 생활관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2. 14.]

제27조 (면학장학금) 일반전형에 의하여 벤처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에게 학업에 전념토록 수업연한 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28조 (연신원장학금) 연합신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에게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업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29조 (조교장학금) 본교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연구조교 또는 실습조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교장학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 2. 14.]

제 5 장 특별장학금 등

제30조 (특별장학금의 종류)

1. 특별장학금: 대학원장은 학생모집과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하는 각 대학원장(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거쳐 등록금을 감면하

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2. 산학장학금: 지역사회의 유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동일 학기·학과(전공)에 4명 이상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수업료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기 신입생총원율에 따라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여부 및 감면율을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0.28)

제31조 (중복지급 금지 등) ①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포상 및 인건비 성격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2. 14.>

1. 성적장학금
2. 조교장학금
3. 근로장학금
4. 봉사장학금
5. 모교장학금
6. 특별장학금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위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32조 (기타사항)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벤처대학원 장학규정」과 「대학원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세부시행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18. 2. 14.)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8.)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2.)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외국인장학금 개정 세칙에 관한 적용) 9조, 16조, 26조의 개정 세칙은 2020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